

# 경 기 규 정

서론 : 본 경기규정은 경기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경기 위원들이 준비하고 시설하는 과정이다. 경기장과 그 설비, 대진표 작성, 체제, 경기진행, 경호경비 안내 등 경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규정이다.

## 제 1조 경기장

- 1) 경기장의 규격 : 경기장은 안전 경계지역을 포함하여 최소 사방 8m에서 최고 10m 까지로 한다.
- 2) 매트색깔의 구분 : 경기장 매트 색깔은 경기지역과 안전 경계지역의 색깔이 확실히 구분되는 색깔로 하되 색깔의 구분이 되지 않을 시에는 청테이프 등으로 경계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.
- 3) 경기개시선의 설치 : 경기개시석은 홍색과 청색으로 설치하며 홍색은 주심석에서 오른쪽에 설치하고 청색은 왼편에 설치한다. 홍청은 경기장 정중앙에 2m 간격으로 눈에 쉽게 띄는 테이프나 띠 등으로 설치한다.
- 4) 매트의 재질 : 경기장의 매트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압축질매트나 고무매트로 2cm ~ 5cm의 굵기와 1m × 1m 또는 1m × 2m 매트로 거칠거나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경기중 분리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.

## 제 2조 설비

경기장의 설비는 기존시설을 제외한 경기진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경기용구의 준비를 말한다.

- 1) 경기장은 최소 1개소부터 5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규격은 본 규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.
- 2) 본부석은 경기위원장석, 경기진행석, 심판위원장석과 함께 내빈석 앞에 설치하며 모든 경기장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.
- 3) 의료석은 본부석 옆에 설치한다. 의료석에는 책상, 의자, 간호사, 환자용 등 의자 3개를 준비한다.
- 4) 배심석은 경기장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관중석을 등 뒤로 하고 경기장과 1m ~ 3m 이내에 설치한다.
- 5) 부심석은 경기장 모서리 밖에 주심으로부터 한 부심은 좌측 건너편에 또

한 부심은 우측 뒤편에 설치한다. 부심의 의자는 될 수 있는 한 이동하기 쉬운 가볍고 견고한 것으로 설치한다.

- 6) 경기 용구 및 준비물은 각 2벌의 청·홍의 호구와 헤드기어 샷보대, 초시계 2, 채점용구 3를 준비한다. 채점용구는 주심 1벌(반침, 청색프러스펜), 부심 2벌(반침, 청색프러스펜)용이며 초시계 1개는 경기 진행용이며 1개는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이다.

### 제 3조 경기

경기는 양선수가 평등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치러져야 한다. 주심은 경기 개시 전 부심과 배심, 계시의 정위치를 확인한 다음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.

### 제 4조 경기위원

경기위원은 ① 경기진행요원 ② 계시원 ③ 경비위원으로 구분하며 본 회의 유단자로서 경기관련 교육을 1번 이상 수료한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경기위원은 본부석 및 진행석의 승낙(허가)없이는 대회 종료시까지 경기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.

- 1) 경기진행요원 : 경기진행요원은 경기자의 호구, 헤드기어, 샷보대 등의 착용을 돕고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.
- 2) 계시원 : 계시원은 배심석 옆에 위치하며 주심의 시작, 그만, 갈려, 계속 등의 명령에 경기시간을 계시한다. 또 주의, 감점, 경고, 반칙패와 주요기술의 명칭을 기록지에 기록한다.
- 3) 경비위원 : 경비위원은 본부석(진행석)의 지시를 받아 경기장의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. 경기장의 출입통제 등 경비, 경호를 담당한다.

### 제 5조 경기의 구분

- 1) 경기의 구분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구분한다.
- 2) 단체전은 무차별 단체전과 체급별 단체전으로 구분한다.
- 3) 개인전은 무차별 개인전과 체급별 개인전으로 구분한다.
- 4) 모든 경기는 성별, 부별, 체급별, 통합으로 나누며 부별은 초등부(저초, 중초, 고초, 유치), 중등부, 고등부, 대학부, 일반부로 구분한다.
- 5) 경기의 구분은 통합체급전과 부별대회로 구분하며 상황에 따라 대회본부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6) 모든 체급은 본 규정 제 9조에 명시한다.

## 제 6조 경기의 시간

경기시간은 부별과 통합대회로 구분한다.

- 1) 초등부 : 1분 2라운드 휴식 30초
- 2) 중등부 : 1분 30초 2라운드 휴식 30초
- 3) 고등부 : 2분 2라운드 휴식 1분
- 4) 대학일반부 : 2분 2라운드 휴식 1분
- 5) 통합전 : 1분 30초 ~ 2분 2회전 휴식 1분
- 6) 경기시간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으나 심판위원장, 경기위원장, 대회운영(집행)위원장이 합의하여 대회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
## 제 7조 대진의 구분

- 1) 대진은 토너먼트로 하되 한 선수가 경기없이 입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위체급이나 하위체급으로 변동시켜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.
- 2) 토너먼트는 대표자(감독자) 회의시 추첨을 통하여 작성하며 2, 4, 8, 16, 32, 64, 128, 256의 배수로 2번 이상 부전승이 될 수 없도록 작성한다. 한번 작성된 대진표는 절대로 교체(정정)할 수 없다.
- 3) 같은 소속의 선수가 첫 경기나 같은 시드에 배정되지 않도록 추첨시 조정할 수 있다.
- 4) 대진표에는 게임번호와 게임수를 기재한다. 게임번호는 2회전에 부전승자가 먼저 경기에 임하도록 작성한다.

## 제 8조 선수의 복장

경기에 출전 중인 선수의 복장은 대회 본부에서 정하지만 기본표준을 제시한다.

- 1) 도복은 면이나 비슷한 천으로 만들어져야하며 튼튼하고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뜯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.
- 2) 상의나 하의는 풍성하며 소매는 8cm 이상의 여유와 하의는 10c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.
- 3) 상의의 길이는 둔부를 덮을만큼 길어야 하며 띠를 졸라매서 빠지지 않도록 한다. 하의는 발등을 덮지 않을 정도로 길어야 하며 경기중 흘러내리거나 벗겨지지 않게 졸라매야 한다.
- 4) 여자선수는 반드시 도복 상의 속에 반팔티셔츠를 입어야 하고 경기중 티셔츠가 빠지지 않도록 하의 속에 넣고 잘 묶어야 한다.

- 5) 붓대, 아대, 족보호대의 착용은 허용하나 경기중 연속으로 풀어지거나 파손 또는 경기진행에 방해할 초래할 시는 제거할 수 있다.
- 6) 양 경기자에게 부상의 우려가 있는 물체(시계, 반지, 팔찌, 목걸이, 귀걸이, 안경, 콘택트렌즈) 등의 착용은 일체 금한다.

## 제 9조 체급

### 1) 통합 체급(남)

주니어 핀급(Junior Pin)	20kg ~ 26kg	26kg급 이하
핀급(Pin)	26.1kg ~ 34kg	34kg급 이하
플라이급(Fly)	34.1kg ~ 40kg	40kg급 이하
반탐급(Bantam)	40.1kg ~ 46kg	46kg급 이하
페더급(Feather)	46.1kg ~ 52kg	52kg급 이하
라이트급(Light)	52.1kg ~ 58kg	58kg급 이하
웰터급(Welter)	58.1kg ~ 63kg	63kg급 이하
미들급(Middle)	63.1kg ~ 68kg	68kg급 이하
헤비급(Heavy)	68.1kg ~ 73kg	73kg급 이하
수퍼헤비급(Super Heavy)	73.1kg ~ 85kg	85kg급 이하
무제한급	체중 제한없음	

\* 초등부는 반탐급 이하 중등부는 웰터급 이하 출전가능

### 2) 부별체급

#### ① 초등부

주니어 핀급(Junior Pin)	25kg 이하	- 25kg급 이하
핀급(Pin)	25.1kg ~ 28kg	- 28kg급 이하
플라이급(Fly)	28.1kg ~ 31kg	- 31kg급 이하
반탐급(Bantam)	31.1kg ~ 34kg	- 34kg급 이하
페더급(Feather)	34.1kg ~ 37kg	- 37kg급 이하
라이트급(Light)	37.1kg ~ 40kg	- 40kg급 이하
웰터급(Welter)	40.1kg ~ 43kg	- 43kg급 이하
미들급(Middle)	43.1kg ~ 47kg	- 47kg급 이하
헤비급(Heavy)	47.1kg ~ 51kg	- 51kg급 이하
수퍼헤비급(Super Heavy)	51.1kg 이상	+ 51.1kg급 이상

② 중등부

핀급(Pin)	35kg 이하	- 35kg급 이하
플라이급(Fly)	35.1kg ~ 40kg	- 40kg급 이하
반탐급(Bantam)	40.1kg ~ 44kg	- 44kg급 이하
페더급(Feather)	44.1kg ~ 48kg	- 48kg급 이하
라이트급(Light)	48.1kg ~ 52kg	- 52kg급 이하
웰터급(Welter)	52.1kg ~ 57kg	- 57kg급 이하
미들급(Middle)	57.1kg ~ 62kg	- 62kg급 이하
헤비급(Heavy)	62.1kg ~ 70kg	- 70kg급 이하
수퍼헤비급(Super Heavy)	70.1kg 이상	+ 70.1kg급 이상

③ 고등. 대학. 일반부

핀급(Pin)	45kg 이하	- 45kg급 이하
플라이급(Fly)	45.1kg ~ 49kg	- 49kg급 이하
반탐급(Bantam)	49.1kg ~ 53kg	- 53kg급 이하
페더급(Feather)	53.1kg ~ 57kg	- 57kg급 이하
라이트급(Light)	57.1kg ~ 62kg	- 62kg급 이하
웰터급(Welter)	62.1kg ~ 67kg	- 67kg급 이하
미들급(Middle)	67.1kg ~ 72kg	- 72kg급 이하
헤비급(Heavy)	72.1kg ~ 80kg	- 80kg급 이하
수퍼헤비급(Super Heavy)	80.1kg 이상	+ 80.1kg급 이상

④ 여자부(통합)

경량	43kg 이하	- 43kg급 이하
경량	43.1kg ~ 48kg	- 48kg급 이하
중량(中)	48.1kg ~ 54kg	- 54kg급 이하
중량(重)	54.1kg ~ 60kg	- 60kg급 이하
중중량(重)(重)	60.1kg ~ 66kg	- 66kg급 이하
무제한	66.1kg 이상	+ 66kg급 이상

## 제 10조 건강상태

선수는 항상 최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- ① 경기 시작 전 주심은 선수의 건강상태를 살핀다.
- ② 선수는 손톱, 발톱, 등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.
- ③ 한쪽 눈의 시력이 없는자, 청각, 농아 장애인, 간질병 환자, 콘택트렌즈 사용자 및 안경착용자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- ④ 경기 중 다운이나 그로기 상태의 선수는 주심이 경기를 중단하고 의사에게 건강체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⑤ K.O된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곧바로 경기임원의 인솔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.
- ⑥ 경기 중 사고시 경기임원이 선수를 병원 또는 숙소로 동행하여야 한다.
- ⑦ 선수의 해외원정시에는 의사의 건강진단서 및 건강증명서를 휴대하고 원정지 책임자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 11조 약물사용 및 휴대 금지규정

- ① 선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약품의 복용이나 화학물질의 휴대를 금지한다.
- ② 선수가 ①항의 물품을 복용 및 휴대했을 시에는 이후 모든 경기의 출전 금지와 그때까지의 전적을 몰수한다.

## 제 12조 출전금지

- ① 신변이 불결한 자, 의사의 출전금지 선고를 받은 자
- ② 한쪽 눈의 시력이 없는 자, 청각, 농아 장애인, 간질병 환자, 콘택트렌즈 사용자, 안경착용자 등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- ③ 경기가 부별로 나뉘지 않고 통합체급으로 운용될 때는 초등부는 반탐급 이하 중등부는 웰터급 이하에만 출전하며 그 이상 체급에는 출전할 수 없다.

## 제 13조 부상, 질병 등 사고의 처리

- ① 한선수 또는 양선수 모두 3번째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경우
- ② 부상의 원인이 경기자 본인에게 있어서 경기속행을 하지 못할 시에는 부상선수에게 패가 선언되거나 부상의 원인이 상대선수의 과실에 의한 부상이면 부상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한다.

- ③ 양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경기진행이 어렵거나 할 수 없을 시에는 그때까지의 득·실점으로 승패를 가린다. 양 선수 모두 무득점일 경우 주·부심이 합의하여 배심에게 보고 후 승패를 선언한다. 또 경기속행의사가 있는 선수에게 승리를 부여한다.

## 제 14조 경기 종료신호와 동시에 건 기술

경기 종료신호와 동시에 건 기술은 인정된다. 주·부심은 선수의 기술이 유효하다고 생각되면 득점으로 인정하고 채점에 반영해야 한다.

## 제 15조 경기의 종료

- ① 경기 종료신호가 있을 경우
- ② 한선수 또는 양선수 모두 너다운되어서 경기속행을 할 수 없는 경우
- ③ 반칙승, 부전승, 기권승이 되었을 경우
- ④ 한선수 또는 양선수 모두 퇴장을 당했을 경우
- ⑤ 한선수 또는 양선수 모두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 속행을 할 수 없는 경우

## 제 1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발생시 처리

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태발생시에는 주·부심 합의를 거쳐 배심에게 보고 후 재가를 받아 처리하고 사안의 정도를 봐서 심판위원장 및 경기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한다.

본 규정의 시행은 2014년 5월 1일로 한다.

[감수]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전광역시 지부회장 김성구

## 심 판 규 정

서론 : 심판은 선수의 승패 및 숙련도를 판단, 판정하는 경기장의 재판관이다. 심판은 학연, 지연,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사심이 없이 공명정대하고 노련한 자세로 경기를 판정하여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판 및 경기 규정에 정통하여야 한다. 심판은 자부심과 긍지, 높은 인격과 권위가 있어야 한다. 또 바른 심신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.

### \* 심판의 경기장 출입시·교대시 예의

2명의 부심 사이에 주심이 매트 뒤에 서고 3명이 배심과 마주 본다. 이때 배심은 배심 책상 앞으로 와서 3명의 주부심과 인사를 한 후 제자리로 돌아간다. 주부심은 뒤로 돌아서 단상에 경례를 한 후 주심이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양 부심과 삼각형으로 마주 본다. 경례를 마친 후 양 부심은 경기장 매트 위 가장자리를 통하여 이동한 후 자리에 착석한다. 이때 가까운 자리의 부심은 부심의자 앞에 서서 다른 부심이 자리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로 눈이 마주친 후 자리에 앉는다. 부심이 자리에 앉은 후 주심은 경기장 주심 위치로 가서 양 선수들을 출입하도록 한다. 심판의 교대시에나 경기장의 경기가 끝난 후에는 반대로 주부심 3자 삼각형 인사 후 단상 예의 후 뒤로 돌아서서 배심과 상호경례를 한 후 시작때와 반대로 퇴장을 한다.

\* 배심은 경기 시작 전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부석 및 단상에 혼자 예를 갖는다. 경기 종료시에도 주부심 퇴장 후 예를 갖는다.

\* 선수는 경기장 출입시에 경기장 입구에서 서로 경례를 한 후 각자의 경기 개시 위치에 서서 주심의 명령대로 한 번 더 경례를 한다. 경기종료 후에는 승패 판정 후에 서로 악수를 한 후 뒷걸음으로 입구에 서서 서로 경례한다.



## 제 1조 심판원의 구성

대회의 규모에 따라 심판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한 경기장의 심판의 구성은 배심1·주심1·부심2명으로 구성한다. 심판위원장은 경기장마다 심판을 배정해서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고 원활한 경기 진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 2조 심판의 자격

- ① 심판은 본회에서 실시한 심판 및 지도자 교육에 참여 이수한 자로 심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② 심판은 1, 2, 3급과 상임심판으로 구분한다.
- ③ 심판은 4~5단 3급, 5~6단 2급, 6단 1급과 6단 이상인 자는 상임심판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④ 심판자격시험은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며 현급수를 취득하고 승단을 하여도 3급에서 2급은 2년, 2급에서 1급은 3년, 상임심판은 1급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응시자격을 부여한다.
- ⑤ 심판은 원칙상 3급 부심 및 계시, 2급 주·부심, 1급은 주·부심 및 배심, 상임심판은 주·부심, 배심, 심판위원장을 할 수 있다.
- ⑥ 3급 심판은 주심을 볼 수 없으며 각 경기의 준결승부터는 1급심판이 주심을 해야 한다.

## 제 3조 배심의 임무 및 권한(배심원)

- ① 배심의 위치는 경기장 밖(1~3m)에 위치하며 옆에는 계시석과 기록석이 위치한다.
- ② 배심은 주·부심 및 기록, 계시를 지휘·감독한다.
- ③ 배심은 주·부심 및 기록, 계시를 교체할 수 있다.
- ④ 배심은 양 부심의 채점에 정당성이 없고 편파적인 부분의 발생시에는 주·부심을 불러 진위를 문의할 수 있다. 또 교체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⑤ 배심은 무승부이거나 동점일 경우, 주심의 생각을 물어 판정할 수 있다.
- ⑥ 배심은 채점권한이 없다.

## 제 4조 주심의 임무 및 권한(주심)

- ① 주심은 경기의 진행을 주관하며 양 부심 및 기록계시원의 보좌를 받는다.
- ② 주심은 양 경기자의 득·실점을 채점하며 경기자가 반칙을 하면 벌칙을 줄 수 있다. 벌칙을 주면 양 부심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

- ③ 주심은 경기시작 전 양 경기자의 복장 및 신체검사를 실시한다.
- ④ 경기 중 기술에 현저한 차이가 나서 선수의 부상 등이 우려될 시에는 선수의 의향을 묻고 양 부심과 숙의 후 배심의 재가를 얻어 판정을 내릴 수 있다.
- ⑤ 주심은 한 경기자 또는 양 경기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의사의 경기 속행 금지 지시가 있을 시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 판정은 그때까지의 득점·실점·기세 등으로 판정하여야 한다.
- ⑥ 주심의 결정 및 선언은 절대적이며 항의는 불허한다.
- ⑦ 주심은 한 경기자 또는 양 경기자가 호신술이나 잡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3초가 넘어도 ‘갈려’를 선언하지 말고 기술의 진전을 살핀 후 ‘갈려’를 선언한다.
- ⑧ 주심은 공격을 계속 피하며 기피하면 주의를 선언한다.
- ⑨ 주심은 휴식중이라도 급한 용무를 제외하고 경기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.

## 제 5조 부심의 임무 및 권한

- ① 부심의 위치는 경기장 밖 모서리에 위치한다. 한 부심은 주심의 좌측 앞쪽 모서리에 위치하며 또한 부심은 주심의 우측 뒤쪽에 서로 대각선으로 위치한다.
- ② 부심은 주심과 배심의 지시에 잘 따라야하며 양 경기자의 득·실점을 채점한다.
- ③ 부심은 경기 중이나 휴식시간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급한 용무가 아니면 휴식시간 중에도 경기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.
- ④ 부심은 기재한 채점표를 절대로 정정하거나 재기재하여서는 안 된다.

## 제 6조 심판 관리 감독

- ① 심판(배심, 주심, 부심)의 관리는 심판위원장이 한다.
- ② 심판의 구분은 1, 2, 3급과 상임심판으로 구분한다.
- ③ 심판의 배정은 경기 개시 전까지 배심, 주심, 부심, 예비 심판까지 배정을 마쳐야 한다.
- ④ 심판의 감독은 각 경기장의 배심의 보고로 심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7조 심판의 복장

심판의 복장은 심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일된 복장으로 한다.

- ① 추·동복은 검정색이나 짙은 곤색 상하 정장에 백색 와이셔츠, 협회 심판 넥타이와 심판표식을 부착한다.
- ② 하복은 짙은 곤색이나 검정색 하의에 반팔 백색 와이셔츠, 협회 심판 넥타이와 심판 표식을 부착한다.
- ③ 심판 및 경기위원은 ①② 항의 복장을 갖추야 한다.
- ④ 동복은 11, 12, 1, 2, 3, 4월로 하고 하복은 5, 6, 7, 8, 9, 10월까지 착용한다.

## 제 8조 계체

계체는 심판위원회에서 임명한 심판위원과 경기위원회에서 임명한 경기위원이 공동으로 실시한다. 계체임원은 경기위원장, 심판위원장 외에 누구의 간섭과 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한다. 계체위원은 계체에 합격한 선수에게는 우측 안쪽 팔뚝에 합격도장을 찍어 주어야 한다.

- ① 계체는 나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 
T셔츠, 팬티 착용시 남자 500g, 여자는 1kg까지 허용 할 수 있다.
- ② 계체 저울은 공인된 저울로만 실시한다.
- ③ 계체는 예비 계체와 본계체로 나누어 실시한다. 예비계체에서 합격한 선수는 계체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예비계체에서 체중 초과, 미달된 선수는 본계체에서 계체한다. 본 계체에서 체중 미달이나 초과된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.
- ④ 계체는 경기시작 1~3시간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다. 계체시간 변동이 있을 시에 심판위원장과 경기위원장은 각 감독이나 코치에게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.
- ⑤ 계체에 합격(통과)된 선수는 계체시 우측 안쪽 팔뚝에 합격도장을 찍어야 한다.
- ⑥ 계체에 임할 선수는 계체 실시 전 의사의 경기출전 유무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. 의사의 출전금지 선언을 받은 선수는 계체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- ⑦ 경기가 당일 끝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체는 매일 실시한다. 그러나 당일 경기가 없는 선수는 계체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.
- ⑧ 부전승자(부별·체급별 3명 이하)도 계체를 실시하여야 한다. 계체에 불합격된 선수는 일체의 수상을 하지 못한다.
- ⑨ 계체심판과 계체 경기위원은 사진이 부착된 선수의 등록신청서를 대조하

면서 계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⑩ 계체위원(심판·경기위원)은 대진표에 합격된 선수와 불합격된 선수를 표기해서 계체가 끝난 후 계체심판과 계체위원 서명 후 심판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## 제 9조 득점, 득점순위 채점

### 1) 득점

- ① 정확한 호신술기로 상대선수를 제압했을 때
- ② 정권으로 상대선수의 복부, 옆구리, 가슴 등을 방해받지 않고 공격했을 때
- ③ 발차기로 상대선수의 얼굴, 가슴, 옆구리, 복부 등을 방해받지 않고 공격했을 때
- ④ 하단 뒤돌려차기로 상대선수를 방해받지 않고 공격했을 때
- ⑤ 메치기 기술이나 발막아 메치기로 상대선수를 공중에 띄워 메쳤을 때
- ⑥ 하단 뒤돌려차기 하는 상대선수를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받아차기로 공격했을 때

### 2) 득점순위 : 득점에는 크고 작은 기술의 득점순위가 있다.

- ① 정확한 호신기술로 상대선수를 제압했을 때
- ② 메치기 기술이나 발막아 메치기 기술로 상대선수를 공중에 띄워 메쳤을 때, 또는 하단뒤돌려차기로 상대 선수를 다운시켰을 때
- ③ 발차기로 상대선수의 얼굴을 공격해서 성공했을 때
- ④ 발차기로 상대선수의 복부, 가슴, 옆구리를 공격해서 성공했을 때
- ⑤ 정권으로 상대선수의 복부, 가슴, 옆구리를 공격해서 성공했을 때
- ⑥ 정확한 득점이나 포인트는 없으나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공격위주로 유리하게 경기에 임했을 때

### 3) 채점 : 채점은 두 경기자의 승패를 가름하므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. 양 선수가 서로 특별한 득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주의·경고 등의 벌칙과 우세하게 경기를 리드한 선수에게 승리의 우선권을 부여한다. 채점표에 +/-를 회전별로 표기. 득점 +, 실점 - 로 표기해 주·부심이 기재해서 승패를 가린다.

- ① K.O 승의 경우 10 : 0
- ② 그로기. 다운 상태까지의 압도적인 경우 10 : 7
- ③ 그로기. 다운에 가까운 월등히 우세한 경우 10 : 8

- ④ 경기를 우세하고 유리하게 리드한 경우 10 : 9

## 제 10조 득점무효

- ① 호신술기로 상대선수를 제압하지 못했을 때
- ② 공격과 동시에 넘어졌을 때
- ③ 정권 공격이 단일공격이 아닐 때
- ④ 발차기로 공격해서 상대선수에게 충격을 주지 못했을 때
- ⑤ 메치기나 발막아 메치기로 공격하며 상대선수와 동시에 넘어졌을 때

## 제 11조 다운

- ① 호신술기로 공격당하여 풀고 나오지 못할 때
- ② 정당한 메치기나 발막아 메치기 기술로 공격당하여 곧바로 일어서지 못할 때
- ③ 정권이나 발차기로 공격당하여 넘어졌을 때
- ④ 정권이나 발차기로 공격당하여 선채로 그로기 났을 때
- ⑤ 상대선수로부터 반칙에 해당하는 공격을 당했을 때

5개항에 해당될 때 주심은 ‘갈려’를 한 후 상대선수를 중립코너로 인도하고 곧바로 카운트를 실시한다. 본 규정 제 11조 ⑤항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시에도 카운트를 실시한다. 카운트 실시 후 K.O가 되면 상대선수에게 반칙패 선언 후 퇴장시키고 경기를 종료한다.

## 제 12조 카운트

주심은 본규정 11조의 다운과 13조의 K.O 사항이면 지체없이 카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. 카운트는 1초에 하나씩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로 해야 한다.

- ① 카운트는 한국어로 하며 1초에 하나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카운트는 9까지를 세고 10초에는 K.O(녹아웃)을 선언한다.
- ③ 카운트를 할 때는 다운된 선수가 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센다.
- ④ 다운당한 선수가 카운트 중에 일어서도 카운트는 8까지 센다. 8까지 세어도 선수가 경기에 임할 태도,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K.O 선언을 한다.
- ⑤ 주심은 카운트를 하기 전 상대선수를 중립코너로 인도를 한 후 카운트를 실시한다. 선수는 주심이 인도를 하면 즉시 중립코너로 가서 대기해야 하며 주심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.

## 제 13조 K.O(녹아웃)

- ① 호신술기로 제압당하여 9을 셀 동안 풀고 나오지 못할 때나 또, 매트나 상대선수를 쳐서 항복을 표시할 경우
- ② 주먹이나 발차기로 공격당하여 9을 셀 동안 일어서지 못하거나 경기에 임하지 못할 경우
- ③ 카운트 8을 세고 경기에 임한 선수가 상대선수의 공격을 받지 않고 다시 다운당한 경우
- ④ 다운당한 선수가 일어서서 카운트 8까지를 세어도 경기에 임할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

## 제 14조 R.S.C(심판(주심) 경기중단)승부(K.O에 해당)

주심은 양경기자의 체력이나 실력에 현저한 차이로 사고, 부상 등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양부심을 주심석으로 불러 의견을 수렴한 후 배심에게 보고하고 양선수를 경기개시석으로 불러 통보한다. 양선수가 경기를 원하면 경기를 속행하나 원하지 않거나 경기 속행한 후 현저한 차이 발생이 되면 R.S.C 선언을 한 후 승패 판정을 내린다.

## 제 15조 판정

- ① 경기 종료 후 주심은 주심과 양부심의 체점표를 모아 배심에게 제출한 후 배심원의 판결에 따른다.
- ② 경기 중 한쪽 또는 양쪽 경기자가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까지의 득·실점으로 판정하되 부상이나 사고의 원인이 반칙에 의한 경우에는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 패가 선언된다. 정당한 공격에 의한 부상의 경우에는 부상선수에게 패가 선언된다.
- ③ 고의에 의한 반칙일 경우에 반칙 패한 선수는 일체의 수상을 하지 못한다.
- ④ 천재지변, 체육관사정, 관중소란 등으로 경기 진행을 하지 못할 때에는 경기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.

## 제 16조 실격

- ① 선수가 주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코치, 감독이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
- ② 한 회전에 2범의 경고를 받는 경우

- ③ 장내 아나운서가 ‘1분 간격으로’ 3번 호명해서 2분 내에 경기에 출전하지  
아니할 경우
- ④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면 주심은 부심과 상의 후 배심의 재가  
를 받아서 실격시킬 수 있다.

## 제 17조 주의, 감점, 경고(금지사항)

금지사항(주의, 감점, 경고)는 선수에게 경기력과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주심은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며 벌칙을 줄 때는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. 심판이 사심을 가지게 되면 경기의 진행과 승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.

### 1) 주의

- ① 경기 중 주심의 허락없이 띠를 고쳐매거나 복장을 고치는 행위
- ② 시간을 끌기 위해 경기장 주위를 도는 행위
- ③ 고의로 장외로 피하거나 나가는 행위
- ④ 등을 보이고 도망가거나 상대선수를 장외로 밀어내는 행위
- ⑤ 하단 뒤돌려차기 후 즉시 일어나지 않거나 경기에 임하지 않는 행위
- ⑥ 다운이나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
- ⑦ 머리, 팔꿈치, 무릎으로 공격하는 행위
- ⑧ 손으로 목 이상을 공격하는 행위
- ⑨ 잡았을 때 무릎 이상을 차거나 치는 행위
- ⑩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나 허리 이하로 몸을 숙이는 행위
- ⑪ 하단 뒤돌려차기 공격시 무릎 이상을 차는 행위
- ⑫ 주심의 명령에 즉시 복종하지 않을 경우

### 2) 감점

- ① 1경기에서 2번째 주의를 받을 때
- ② 1경기에서 경고를 받을 때(자동감점)

3) 경고 : 경고는 선수에게 중대한 실점이 되므로 주심은 경솔히 선언해서는 안 된다.

- ① 음부를 고의로 공격했을 경우
- ② 주먹, 머리, 팔꿈, 무릎으로 상대방을 때렸을 때
- ③ 다운 중인 상대를 때리거나 발로 공격했을 때
- ④ 경기 중 선수가 주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보일 때

- ⑤ 코치 및 감독이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출입할 시는 경고 및 실격까지 선언할 수 있다.

## 제 18조 반칙패

1경기에서 감점을 선언받은 선수가 다시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반칙을 해서 경고를 받을 때와 1경기에서 2번째 경고사항이 발생되면 주심은 양부심을 주심적으로 부심을 불러 상의 후 합의가 되면 배심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받아서 반칙패를 선언한 후에 퇴장을 명한다. 반칙패 선언은 해당 반칙의 제스처(동작 재현)를 한 다음에 해당선수를 지목하여 반칙패 선언을 한 다음 해당선수의 출입구를 가리키며 퇴장시킨다. 본 규정 제 15조 판정 ③항의 고의에 의한 반칙패를 당한 선수는 일체의 수상을 하지 못한다. 다만 주의, 감점, 경고에 이은 반칙패 해당자는 수상을 할 수 있다.

## 제 19조 주심의 명령어 및 동작 적용

차렷, 경례, 준비, 시작, 갈려, 계속, 그만, 주의, 감점, 경고, 반칙패, 퇴장.

- 1) 차렷 : 차렷은 경기시작과 종료 후 선수상호간 예의시 실시한다.
- 2) 경례 : 경례는 경기시작과 종료 후 선수상호간 예의시 실시한다.
- 3) 준비 : 준비는 경기시작시에만 적용한다.
- 4) 시작 : 시작은 경기시작과 본 규정 19조 5)-⑥⑦ 항의 갈려 후에만 적용한다.
- 5) 갈려
  - ① 한선수 또는 양선수가 모두 장외로 나갔을 때
  - ② 한선수 또는 양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
  - ③ 한선수 또는 양선수 모두 전의를 상실하여 공격치 않고 쳐다보거나 빙빙도는 행위시
  - ④ 양 선수가 서로 잡고서 메치거나 꺾기 등 3초간 기술의 변화가 없을 때
  - ⑤ 양선수가 엉겨서 주먹이나 발로 득점과는 관계없이 뒤엉길때
  - ⑥ 본 규정 제 17조 금지사항 발생시 주심은 갈려를 선언하고 계시 멈춤을 계시에게 명령한다. 그리고 양선수를 경기개시석에 세운 후 해당 벌칙에 해당하는 제스처 재현 후 벌칙을 부여한다.
  - ⑦ 그 밖에 주심이 판단해서 갈려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시 갈려를 선언하고 해당 행위에 합당한 조치를 한 후 시작을 명한다. 갈려 후 계시 멈춤은 경기의 진행 및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심은 신중을 기하여 선언해야 한다.



- 6) 계속 : 계속은 본 규정 19조 5)①②③④⑤항 후에 적용한다.
- 7) 그만 : 그만은 각 회전 종료시와 경기 종료시에만 적용한다.
- 8) 주의 : 주의를 본 규정 제 17조(금지사항) 1)에 명시한다. 주의사항이 발생하면 주심은 갈려를 선언하고 계시석에 시간멈춤을 명령한 후 해당선수에게 주위에 해당하는 제스처를 한 후 인지손가락으로 해당선수를 가리키며 주의를 선언하고 경기 계속을 명한다.
- 9) 감점 : 감점은 본 규정 제 17조(금지사항) 2)에 명시한다. 1경기에서(1라운드) 2번의 주의사항 발생시 감점을 선언하며 경고사항 발생시에는 감점 구호없이 자동감점처리 된다.
- 10) 경고 : 경고는 본 규정 제 17조 3)항에 명시한다. 경고사항이 발생하면 주심은 갈려와 동시에 계시멈춤을 지시하고 양선수를 경기 개시 위치에 서게 한 후 해당 경고사항 행위를 제스처로 보여준 후 경고선언을 한다.
- 11) 반칙패 : 반칙패는 본 규정 제 18조에 명시한다. 반칙패 사항 발생시나 주위에 이은 감점을 받은 선수가 또 주의사항 이상의 반칙을 했을 때도 반칙패가 주어진다. 본 규정 제 15조 3)의 고의에 의한 반칙패를 당한 선수는 일체의 수상 및 경기에 임할 수 없다. 주심은 반칙패 사항이 발생하면 양선수를 경기 개시위치에 서게 한 후 해당 반칙패 사항행위를 제스처로 보여준 후 반칙패 선언을 하고 퇴장을 명한다. 퇴장을 명받은 선수는 선수 상호간 인사를 나눈 후 선수 출입구로 퇴장해야 한다.
- 12) 퇴장 : 퇴장은 본 규정 제 17조 반칙패에 해당하는 선수에게만 선언한다. 퇴장이 선언되면 남은 선수가 자동 승자가 되며 기록은 반칙승으로 기록한다.

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감수]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전광역시 지부회장 김성구

# 합기술 경연 심판규정

## 제 1조

- ① 합기호신술과 무기술, 발차기, 낙법으로 구분한다.
- ②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한다.
- ③ 개인전은 1:1, 1:2, 1:3, 1:다수 로 구분한다.
- ④ 개인전 경기시간은 2분 이내로 한다.
- ⑤ 단체전 경기는 10인 이상으로 한다.
- ⑥ 단체전 경기시간은 7분 이상 10분 이내로 하며 시간 초과시에는 1분당 1점씩 감점한다.
- ⑦ 개인전 및 단체전은 합기도 전 종목을 시연할 수 있다.
- ⑧ 병기술은 단·중·장봉술과 단·중·장검술, 2단/3단 봉술·창술·격검술로 구분한다.
- ⑨ 발차기는 상·중·하단 돌려차기, 두발모아 앞차기 두발벌려차기, 가위차기, 공중회전차기등 묘기 비상 발차기를 시연할 수 있다.
- ⑩ 낙법은 장애물 낙법과 공중낙법, 묘기낙법으로 구분하며 시연할 수 있다.

## 제 2조 채점기준

### 1) 개인전(30점)

- ① 기술의 정확성(10점) : 합기도술기의 정확한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
- ② 기술의 융통성 및 연기력(10점) : 합기도술기로서 창작성이 있는 술기
- ③ 속도 및 힘의 균형(10점) : 정확하고 빠른 동작으로 순발력과 시연중 균형을 적절히 안배하는 동작

### 2) 단체전(100점)

- ① 단체의 조직력과 통일성(20점)
- ② 단체술기의 정확성(20점)
- ③ 기술의 일체성(20점)
- ④ 단체의 박력성(20점)
- ⑤ 창작성 및 예술성(20점)

- 3) 무기술 : 무기술은 합기도의 무기 중 택1하여 시연한다. 채점은 본 규정 제 2조 ①항 개인전 방식으로 한다.

4) 낙법

- ① 장애물낙법 : ㉠ 길이 ㉡ 높이
- ② 개인낙법 : ㉠ 화려함 ㉡ 높이

5) 발차기(족술) 격파

- ㉠ 뒤돌려차기 : 정확한 차기로 목표물을 가격하고 힘, 스피드를 본다.
- ㉡ 궁중발차기 : 스피드와 힘있는 가격과 착지동작을 본다.

6) 호신술 : 호신술은 본 규정 제 2조 1) 항 개인전 방식으로 채점한다.  
1인 4수까지 시연하며 1수당 연결동작은 2회까지로 한다.

- ㉠ 손목잡기, 옷잡기
- ㉡ 주먹막기, 발막기, 메치기
- ㉢ 선기술, 연행술, 포박술
- ㉣ 검술, 봉술, 지팡이술
- ㉤ 특수발차기, 낙법, 격검술

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감수]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전광역시 지부회장 김성구